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가전략기술 기획·육성·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생명연구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생명연구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기초·원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과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구축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1명(6급 1명)과 국립과천과학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을(7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3명(7급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청원업무 총괄 및 청원심의회 운영

제5조제12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남·북한간의 공동연구, 인력 교류, 기술표준화 등 교류·협력

제7조제3항 중 “제26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제3항제27호부터 제57호”를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5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1조제3항제58호부터 제61호까지, 제63호부터 제66호까지 및 제68호부터 제96호”를 “제11조제3항제59호부터 제62호까지, 제64호부터 제67호까지 및 제69호부터 제9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생명기술과·융합기술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원자력연구개발과·거대공공연구협력과·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

흥”을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생명기술과·첨단바이오기술과·융합기술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원자력연구개발과·거대공공연구협력과·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를 “바이러스기초연구소·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국가전임상시험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의사과학자 양성

26. 바이오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창업기업 보육

제7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한다.

⑪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2. 합성생물학·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3세대 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3. 데이터기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4.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5.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조성

7.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전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

8.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지정·육성

9. 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생명연구자원 분야 국제협력 증진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12. 생명연구자원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13.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실태 조사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계 인력 육성·활용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제9항제17호 및 제4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각각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69호”를 “제7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4조제3항제70호부터 제96호”를 “제14조제3항제71호부터 제9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26. 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간 협력 지원

17. 인터넷서비스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에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23.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

24.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25.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활용

26. 과학기술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제15조제5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7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출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 총괄

제2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항제5호”를 “제19호, 제7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검

사 및 행정처분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주·울산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장은 제6항제19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생명연구자원과장·연구산업진흥과장·연구제도혁신과장·정보보호산업과장”을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첨단바이오기술과장·연구산업진흥과장·연구제도혁신과장·정보보호산업과장”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13의 정원 1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3 중 총계 “812”를 “818”로 하고, 일반직 계 “803”을 “80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7”을 “48”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284”를 “289”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29”를 “231”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2”를 “6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814”를 “818”로 하고, 일반직 계 “805”를 “80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7”을 “48”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303”을 “308”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10”을 “212”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4”를 “6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91”을 각각 “19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2”를 “31”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를 “18”로 하고, 공업연구사 “27”을 “28”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92”를 각각 “19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2”를 “31”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를 “18”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4”로 하며, 공업연구사 “27”을 “2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875”를 “868”로 하고, 일반직 계 “874”를 “868”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03”을 “201”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08”을 “210”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5”를 “213”으로 하고, 통신운영주사보 “13”을 “9”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876”을 “865”로 하고, 일반직 계 “875”를 “865”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00”을 “198”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0”을 “212”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3”을 “30”으로 하고, 방호서기보 “6”을 “3”으로 하며, 통신운영주사보 “13”을 “9”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5”를 각각 “8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3”을 “82”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1”을 각각 “8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79”를 “78”로 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별표 13 “3. 제3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을 삭제하고, “총계 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2”를 삭제하며,

“5. 제3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를 삭제하고, “총계 1”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를 삭제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1”을 삭제한다.

별표13 “8. 제33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신설하고, “총계 1”를 신설하며, 총계 1 다음에 “일반직 계 1”를 신설하고, 일반직 계 1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1”를 신설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호, 2017.12.28.>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과학기술정보

통신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정원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⑧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⑨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청원업무 총괄 및 청원심의 회 운영
⑩ · ⑪ (생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⑫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 방송 분야의 남 · 북한간의 공동 연구, 인력교류, 기술표준화 등 교류 · 협력	<삭 제>
19. ~ 24. (생략)	19. ~ 24. (현행과 같음)
⑬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⑬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 방송 분야의 남 · 북한간의 공동

⑭ · ⑮ (생략)	연구, 인력교류, 기술표준화 등 교류 · 협력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② (생략)	⑭ · ⑮ (현행과 같음)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7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제27호----- -----.
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8호부터 제61호까지, 제63호부터 제66호까지 및 제68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 ----- -----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58호----- ----- --.
⑥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 · 기초연구진흥과 · 원천기술과 · 생명기술과 · 융합기술	⑤ ----- ----- ----- 제11조제3항제59호부터 제62호까지, 제64호부터 제67호까지 및 제69호부터 제97호----- -----.
	⑥ ----- 연구개발정책과 · 기초연구진흥과 · 원천기술과 · 생명기술과 · 첨단바이오

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 기술과·원자력연구개발과·거 대공공연구협력과·연구성과일 자리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기 관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 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관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서 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⑨ (생 략) ⑩ 생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u>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발전 시책 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u> 10. ~ 15. (생 략) 16. <u>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 지원</u> 17. <u>합성생물학·마이크로바이 옴(Microbiome)·3세대 치료</u>	기술과·융합기술과·거대공공 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원자 력연구개발과·거대공공연구협 력과·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 진흥----- ----- -----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 15. (현행과 같음) 16. <u>바이러스기초연구소·바이러 스연구자원센터, 한국파스퇴 르연구소(IP-K), 국가전임상 시험센터 -----</u> -- <삭 제>	제 등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 의 육성·발전 시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18. ~ 2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8. ~ 24. (현행과 같음) 25.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의사과학자 양성</u> 26. <u>바이오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창업기업 보육</u> ⑪ <u>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발전 정책 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u> 2. <u>합성생물학·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3세대 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 구개발의 지원</u> 3. <u>데이터기반 바이오 관련 연 구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u> 4. <u>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u> 5. <u>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제 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 사업 지원</u> 6. <u>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u>
--	--	--	--

	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 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조 성
<신 설>	7.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의 수집·보전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
<신 설>	8.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 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 관 지정·육성
<신 설>	9. 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신 설>	10. 생명연구자원 분야 국제협 력 증진
<신 설>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 인 등 관리
<신 설>	12. 생명연구자원 분야 부처 연 계 사업 추진
<신 설>	13.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실태 조사
⑪ ~ ⑲ (생 략)	⑫ ~ ⑳ (현행 제11항부터 제1 9항까지와 같음)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①·② (생 략)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	③ -----

항을 분장한다.	-----.
1.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 립·조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 공계 인력 육성·활용 사업 기 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중장 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	<삭 제>
4.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 계 촉진에 관한 사항	<삭 제>
5.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 및 활용	<삭 제>
6. 과학기술인력의 육성·활용 및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삭 제>
7. ~ 25. (생 략)	7. ~ 2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 ⑧ (생 략)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 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7. 「지능정보화 기본법」--- ----- -----
18. ~ 41. (생 략)	18. ~ 41. (현행과 같음)
42.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 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42. 「지능정보화 기본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원 및 관리·감독	-----
43. ~ 45. (생 략)	43. ~ 45. (현행과 같음)
⑩ 디지털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u> 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u>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 간 협력 지원</u>	<삭 제>
11. <u>인터넷서비스 공정경쟁 환경조성</u> 에 관한 사항	<삭 제>
⑪ ~ ⑫ (생 략)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 ③ (생 략)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36호부터 제6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
⑤ 방송진흥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0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네	-- 제70호-----
	⑤ -----
	---- 제14조제3항제71호부터 제97호-----

트위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u>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u>
<신 설>	26. <u>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⑩ 정보보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u>	<삭 제>
11. <u>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12. ~ 19. (생 략)	12. ~ 19. (현행과 같음)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u>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신 설>	16. <u>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u>

<u><신 설></u>	<u>사업자간 협력 지원</u>
⑭ ~ ⑮ (생 략)	17. 인터넷서비스 공정경쟁 환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②	<u>경조성에 관한 사항</u>
(생 략)	⑭ ~ ⑮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②
항을 분장한다.	(현행과 같음)
1. ~ 21. (생 략)	③ -----
<u><신 설></u>	-----.
	1. ~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2.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u>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u>
<u><신 설></u>	<u>립·조정</u>
	23.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중장
<u><신 설></u>	<u>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u>
	24.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
<u><신 설></u>	<u>계 촉진에 관한 사항</u>
	25.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u><신 설></u>	<u>조사·분석 및 활용</u>
	26. 과학기술인력 육성·활용 및
<u><신 설></u>	<u>처우에 관한 실태조사</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① ~ ④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	⑤ -----
항을 분장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기	<u><삭 제></u>
<u>준 표준화 및 운영·개선에</u>	
<u>관한 사항</u>	
10. ~ 29. (생 략)	10. ~ 29.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 ⑥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⑦ -----
분장한다.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u>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출</u>
	<u>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 관련</u>
	<u>업무 총괄</u>
제21조(전파관리소) ① ~ ⑤ (생	제21조(전파관리소)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⑥ -----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	-----.
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	-----
장은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	--- 제19호, 제7항제5호-----
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 18. (현행과 같음)
1. ~ 18. (생 략)	19.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u><신 설></u>	<u>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출</u>
	<u>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u>

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④ (생 략)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u>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생명연구자원과장·연구산업진흥과장·연구제도혁신과장·정보보호산업과장 및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u> 제32조(생명연구자원과) ① <u>생명연구자원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u>생명연구자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u> 제33조(한시정원) ① (생 략) ② 삭 제 ③ <u>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기초·원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u>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첨단바이오기술과장·연구산업진흥과장·연구제도혁신과장·정보보호산업과장</u> ----- -----. <삭 제> 제33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④ (생 략) ⑤ <u>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구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u> ⑥·⑦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⑦ (현행과 같음) ⑧ <u>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13의 정원 1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812		818		+6
일반직 계	.		.		.		
	.		.		.		
			803		809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		
	.		.		.		
			47		48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 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 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284	289	+5
.	.	.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 ·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 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 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229	231	+2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 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 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 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 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 위생주사보·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u>62</u>	<u>6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7</u>	-1
·	·	·	
·	·	·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814</u>	<u>818</u>	+4
·	·	·	
·	·	·	
일반직 계	<u>805</u>	<u>809</u>	+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47</u>	<u>48</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 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 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u>303</u>	<u>308</u>	+5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u>210</u>	<u>212</u>	+2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 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식품 위생주사보 · 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u>64</u>	<u>61</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7</u>	-1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91</u>	<u>190</u>	-1
일반직 계	<u>191</u>	<u>190</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2</u>	<u>31</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9</u>	<u>18</u>	-1
•	•	•	
•	•	•	
공업연구사	<u>27</u>	<u>28</u>	+1
•	•	•	
•	•	•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92</u>	<u>190</u>	-2
일반직 계	<u>192</u>	<u>190</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2</u>	<u>31</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9</u>	<u>18</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5</u>	<u>4</u>	-1

•	•	•	
•	•	•	
공업연구사	<u>27</u>	<u>28</u>	+1
•	•	•	
•	•	•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875</u>	<u>868</u>	-7
일반직 계	<u>874</u>	<u>868</u>	-6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 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203</u>	<u>201</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208</u>	<u>210</u>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15</u>	<u>213</u>	-2

•	•	•	
•	•	•	
통신운영주사보	<u>13</u>	<u>9</u>	-4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7</u>	-1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876</u>	<u>865</u>	-11
일반직 계	<u>875</u>	<u>865</u>	-10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 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200</u>	<u>198</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210</u>	<u>212</u>	+2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3</u>	<u>30</u>	-3
방호서기보	<u>6</u>	<u>3</u>	-3
·	·	·	
·	·	·	
통신운영주사보	<u>13</u>	<u>9</u>	-4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7</u>	-1

[별표 9]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85</u>	<u>84</u>	-1
일반직 계	<u>85</u>	<u>84</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3</u>	<u>82</u>	-1

[별표 10]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81	80	-1
일반직 계	81	80	-1
3급 또는 4급 이하	79	78	-1

[별표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3. 제33조 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2	<삭 제>	-2
총계	2	<삭 제>	-2
일반직 계	2	<삭 제>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2	<삭 제>	-2

·	·	·	
·	·	·	
5. 제33조제5항 관련 한시 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5. 제33조 제5항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2 년 12월 3 1일)	<삭 제>	-5. 제33 조제5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2 년 12월 31일)
총계	1	<삭 제>	-1
일반직 계	1	<삭 제>	-1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 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 ·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 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 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1	<삭 제>	-1
·	·	·	
·	·	·	

8. 제33조제8항 관련 한시 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신 설>	8. 제33조 제8항 관 련 한시 정원(존 속기한: 2 024년 12 월 31일)	+8. 제33 조제8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1일)
총계	<신 설>	1	+1
일반직 계	<신 설>	1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 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 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신 설>	1	+1